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153
------------------	------

제출년월일 : 2007. 6. .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역자율방재단 목적 및 조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제4조)
-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규정(안 제7조, 제8조)
-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규정(제9조, 제10조)
-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사항규정(제13조, 제14조)

3. 근거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2007. 1. 26 법률 제8283호]

4. 의안전문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첨부 : 1. 근거법령(발췌본) 1부
 2. 입법예고 사본 1부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방재단은 제천시에 설치한다.

제3조 (명칭) 명칭은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함)"이라 한다.

제4조 (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부단장은 단장이 지정한다.

④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⑦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제천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⑧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⑨ 읍·면·동지역자율방재단원은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제천시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 ⑩ 읍·면·동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 한자로 한다.

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대표는 읍·면·동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6조 (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제천시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전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자치단체의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 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 (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 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 월 1회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제천시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장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회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 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 (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

제13조 (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 (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시장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 월 10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양 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위
촉합니다.

년 월 일

제천시장

[별지 제2호 서식]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성명	○○○(성별)	연령		혈액형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격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
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단체명			대표자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휴대전화)	
주소				대표전화	
담당자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휴대전화)		부서명		
인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비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	남 ○○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
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별지 제3호 서식]

활동확인서(예시)

성명	(인)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간	○○○○년○○월○○일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	
	장소	*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p>[건의사항]</p> <p>*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p>			
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명	(인)

본인은 제천시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4호 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성명	활동상황		비고
		횟수	시간	
1				
2				
3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제2 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제2-1 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 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 3-1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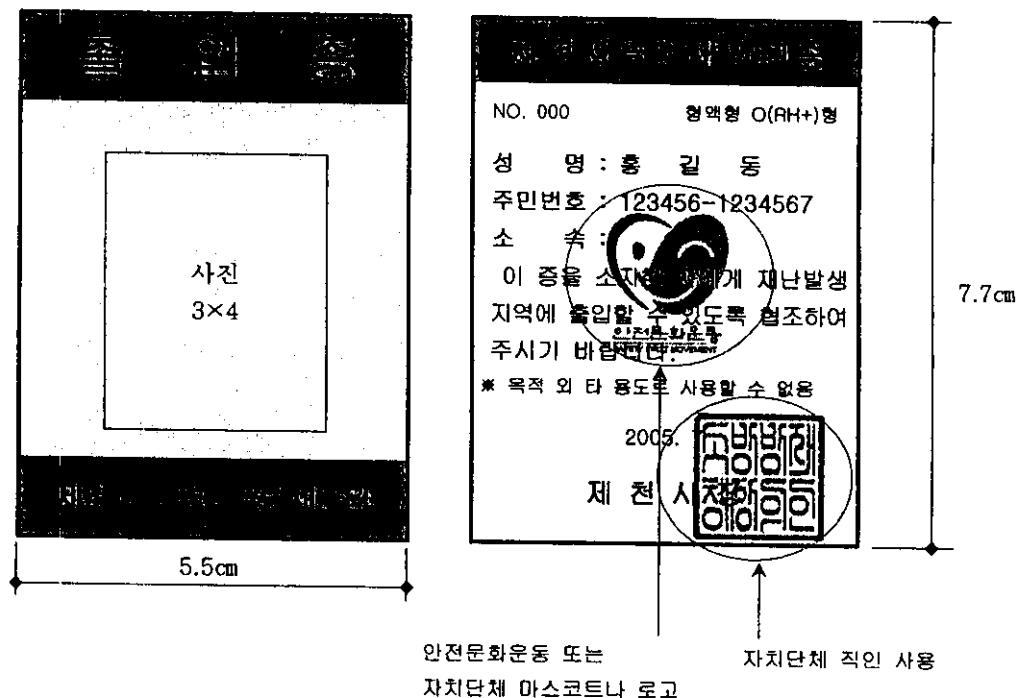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 세부사항은 별도불입 가능

※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출 입 증



관 계 법령 발췌

○ 자연재해 대책법

(법률 제8283호 2007. 1. 26 개정)

제66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예방·대응·복구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법률 제7410호 2005. 3. 24일부개정)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천시 공고 제 2007 - 516 호

제천시 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4일
제 천 시 장

제천시 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법률 제8283호 2007. 1. 26개정)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례로 제정·운영코자함

3. 주요내용

- 지역자율방재단 목적 및 조직에 관한 사항 규정(제1조, 제4조)
-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규정(제7조, 제8조)
-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규정(제9조, 제10조)
-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사항규정(제13조,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 5월 10 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재난관리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641-5642/5649 FAX 641-5659 E-mail:jogh04@hanmail.net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